제안규정

정 1993. 11. 01 전문개정 2005.07.29 정 2007. 05. 28 개 개 정 2010. 08. 02 개 정 2013. 04. 10 정 2018. 09. 07 개 개 정 2019. 09. 25 정 2021. 08. 30 개 개 정 2022. 05. 04 개 정 2023. 02. 28 [안전시스템부 042-600-8053]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(주)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참여와 창의로 직무개선과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제안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개선, 업무능률향상 및 안전관리 등 회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제출되는 개선사항, 아이디어, 노하우 등을 통칭해서 말한다.<개정 2019.09.25>
- 2. 공모제안이라 함은 특정주제에 대한 다수 직원의 아이디어(해결방안 등)를 수렴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.<개정 2007.5.23>
- 3. 공동제안이라 함은 2인 이상 또는 단체로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<개정 2007.05.23>
- 4. (삭 제)<개정 2007.05.23>
- 5. 유형제안이라 함은 그 실시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할 수 있는 제안을 말한다.<개정 2013.04.10, 2019.09.25>
- 6. 무형제안이라 함은 그 실시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제안을 말한다.
- 7. 채택제안이라 함은 제안심의결과 7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말한다.<개정 2022.05.04>
- 8. 불채택제안이라 함은 제안심의결과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을 말한다.
- 9. 제안주관부서라 함은 전사적으로 제안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10. 제안관리부서라 함은 사업장별 제안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11. 아이디어 제안이라 함은,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효과를 기술하는 것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말한다.<신설 2007.05.23>
- 12. 개선제안이라 함은, 개선사항을 선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 <신설 2007.05.23>
- 13. 지식제안이라 함은 회사업무와 관련한 절차, 방법, 기준 및 현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제안을 말한다.<개정 2019.09.25>
- 14. 시행완료라 함은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을 시행기한 이내(채택 후 6개월)에 완료한 상태를 말한 다.<신설 2021.08.30>
- 15. (삭 제)<신설 2021.08.30, 개정 2022.05.04, 2023.02.28>
- 16. 시행불가라 함은 미시행 상태에서 미시행 사유서를 등록하는 것으로써 최종 처리된 상태를 말한다. <신설 2021.08.30, 개정 2022.05.04, 2023.02.28>

- 17. 시행책임자라 함은 시행부서 부(팀)장이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별로 기한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.<신설 2022.05.04.>
- 18. 미시행이라 함은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의 시행기한을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.<신설 2023.02.28> 제3조(제안의 분류) 제안은 개선제안, 아이디어 제안 및 지식제안으로 분류하며, 지식제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개정 2019.9.25>
 - 1. (삭 제) <개정 2007.5.23, 2019.9.25>
 - 2. (삭 제) <개정 2007.5.23, 2019.9.25>
 - 3. (삭 제) <개정 2019.9.25>
 - 1. 업무매뉴얼 : 단위업무에 대한 처리기준, 경험 및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 <개정 2019.9.25>
 - 2. R / D 가공 : 학술적인 이론, 기타 자료 및 정보의 회사업무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기술한 것 <개정 2019.9.25>
- 제4조(제안의 범위) 제안은 회사 경영, 업무 및 안전관리, 감사 착안(필요)사항 등에 관하여 실제 적용 하였거나 적용 가능한 모든 개선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, 소그룹 학습활동 및 분임조활동 보고서를 포함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<개정 2019.9.25. 2023.02.28>

- 1.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기타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
- 2.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(분할제안 포함)
- 3.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, 진정,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- 4. 이미 구체적 운영계획이 수립된 업무, 상급부서의 구체적인 지시사항 이행,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등 그 직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일상업무를 기술한 것. 단, 단순한 지적 또는 지시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제안으로 본다.
- 5. 기타 제안주관 및 관리부서 또는 제안심의소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
- 6. 일반적으로 널리 공지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<신설 2019.9.25>

제5조(제안의 장려)

- ①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,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- ②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제안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시설, 자재 또는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안주관부서장은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제안기간을 지정하거나, 특정주제를 대상으로 한 제안을 모집할 수 있다.
- 제6조(제안의 시기) 제안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개선제안은 실시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적용 기간을 거쳐 그 개선효과를 알 수 있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10>
- 제7조(공모제안)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다수 직원의 아이디어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제를 정하여 공모 할수 있으며, 이 경우 처리절차 및 포상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.<개정 2013.4.10>

제 2 장 제안심의위원회

제8조(제안심의소위원회)

- ① 각 사업장은 사업장별 제안활동 심의를 위하여 제안심의소위원회를 둔다.
- ② 본사 제안심의소위원회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비대면 상시 심의하며, 위원회의 구성은 제안의 속성을 고려하여 제안심의위원(별표 5)에 따라 제안주관부서에서 지명한다.

<개정 2013.04.10, 2022.05.04, 2023.02.28>

- ③ 지사 제안심의소위원회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비대면 상시 심의하며, 위원회의 구성은 제안의 속성을 고려하여 제안심의위원(별표 5)에 따라 제안관리부서에서 지명한다. <개정 2013.04.10, 2023.02.28>
- ④ 제안심의소위원회의 결과 보고는 본사 분기 1회, 지사 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심의 위원은 심의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.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7.05.23, 2019.09.25, 2022.05.04, 2023.02.28>
 - 1. 동 규정 제12조(제안의 접수)에 의거 접수된 제안<개정 2019.9.25>
 - 2. 제안심의위원회에 의뢰할 제안의 심의
 - 3. 제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
 - 4. (삭 제)<신설 2021.08.30, 개정 2023.02.28>
 - 5. 기타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⑤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제안심의소위원회의 심의는 과반수로 채택 여부를 판단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불채택으로 결정된다. 다만, 개선제안의 경우 제안등급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된다. <개정 2019.9.25, 2022.05.04, 2023.02.28>
- ⑥ 제안의 진행상태가 '관리자반려' 혹은 '저장' 단계로써 15일 이내에 제안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 활동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 불채택으로 처리한다.<신설 2023.02.28>

제9조(제안심의위원회)

- ① 제13조(제안의 심의) 제2항에 따라 상정된 제안의 심의를 위하여 본사에 제안심의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3.4.10, 2023.02.28>
- ② 제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사업본부의 장이 되고, 위원은 처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제안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.<개정 2013.4.10, 2019.9.25, 2021.08.30, 2023.02.28>
- ③ 제안심의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그 심의사안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9.25>
 - 1. 제안심의소위원회에서 의뢰한 제안의 평가 및 등급 결정
 - 2. 특별포상 심의
 - 3. (삭 제)<개정 2013.4.10>
 - 4. 제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제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제안등급 결정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3.4.10, 2019.9.25, 2022.05.04>

제 3 장 제안의 절차

제10조(제안자) 제안은 회사 임직원은 누구나 할 수 있다.<개정 2007.5.23 > **제11조(제안서 제출)**

- ① 전산시스템에 제안사항을 입력하여 승인완료 된 것을 제안의 제출로 본다.<개정 2022.05.04>
- ② 공동제안은 전산입력 시 제안자 각각의 기여도를 백분율(%)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③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자(부서)와 시행자(부서)가 다를경우에만 시행자(부서)가 다시 별개의 개선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.<개정 2021.08.30>
- ④ 논문 또는 소그룹 학습활동보고서 등의 제출 및 심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.
- ⑤ (삭 제)<개정 2007.5.23 >

제12조(제안의 접수)

- ① 제안은 각 사업장별 제안관리부서에서 접수하며, 본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안의 경우에는 본사로 이관시켜 접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4.10>
- ② 동일 또는 유사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7.5.23 >
-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안주관부서 및 관리부서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으며, 제안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. 이때 제안자가 미이행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. <개정 2007.5.23., 2022.05.04>
- ④ 제안주관부서 및 관리부서는 접수된 제안을 검토하여 동 규정 제4조(제안의 범위) 1~6호에 해당되는 제안의 경우 심의과정 없이 불채택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사유를 검토의견에 입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05.04>

제13조(제안의 심의)

- ① (삭제)<개정 2013.04.10, 2019.09.25, 2022.05.04>
- ② 제안의 심의는 제안심의기준(별표 1)에 의거 개선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심의결과에 따라 제안등급 부여기준(별표 2)에 의거 등급을 부여한다. 단, 심의결과 채택된 개선제안의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4등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안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.
- ③ 제안심의위원은 공정하고 신속, 정확한 제안의 평가와 더불어 부하직원 육성을 위한 교육자, 제안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④ 제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혹은 관련부서에 제안에 관한 조사, 실험, 분석 및 의견 제출을 의뢰할 수 있으며, 조사실험 분석한자는 제안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.

제14조(재심요청)

- ① 제안자는 1회에 한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을 재심청구서(별지 제1호 서식)에 의거 제안관리부 서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재심청구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- ③ 제안관리부서는 재심요청된 제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제안심의소위원회 또는 제안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10>
- ④ 제안주관부서는 사업장별 제안심의 결과를 분석·검토하여야 하고, 이를 통하여 제안심의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사업장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10>

제 4 장 포 상

제15조(포상)

- ① 제안포상은 일반포상, 종합포상, 마일리지포상, 특별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- ② 공동제안의 경우 제안포상과 인사규정상의 가점은 개인별 제안기여도에 의하여 배분한다.
- ③ (삭제)<개정 2021.08.30>
- 제16조(일반포상) 제안심의결과를 기준으로 별표3의 제안등급별 포상기준에 의거 제안자에게 해당 등급 상금을 지급한다.
- 제17조(종합포상) 연간 제안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8조(마일리지 포상)

- ① 채택제안은 제안등급별 포상기준(별표3)에 의거 마일리지를 부여하고, 누적 마일리지 포상기준(별표 4)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한다.
- ② (삭제) <신설 2010.08.2, 개정 2022.05.04>
- 제19조(특별포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- 1. 제안전국대회 등과 같이 대외기관에서 제안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경우
- 2. 채택된 지식제안 중 우수사례
- 3. 제안활동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경우

제20조(인센티브)

- ① 1~3등급 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상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가요소 중 등급별 기준에 의한 점수를 부여한다.<개정 2007.5.23 >
- ② 경비절감 효과가 큰 제안에 대하여 사장은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지급금액은 그 제안을 1년간 시행할 경우의 예상 경비절감액의 5% 이내로 한다.

제 5 장 시행 및 사후관리 등

제21조(시행)

- ①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은 시행부서 부(팀)장의 책임하에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, 시행책임자는 시행 후 제안실시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이 6개월 이내 개선제안으로 재채택 될 경우 제안실시 결과보고서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.
 - <개정 2013.04.10, 2019.09.25, 2021.08.30, 2022.05.04>
- ②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이 기한 내 미시행된 경우 시행책임자는 미시행사유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써 시행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. <개정 2013.04.10, 2021.08.30, 2022.05.04, 2023.02.28>
- ③ (삭제)<개정 2021.08.30>
- ④ (삭제)<개정 2021.08.30, 2022.05.04>

제22조(사후관리)

- ① 제안관리부서는 사업장별 제안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의 사후관리 현황을 제안주관부서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10>
- ② 제안주관부서는 전사 제안관리현황 점검과 실적분석을 통하여 제안활동의 점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(삭제)<개정 2013.04.10, 2022.05.04>

제23조(권리의 회사보유)

- ① 회사는 제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.
- ② 시행부서의 장은 제안이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기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관리규정에 의거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을 관련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 등에 의하여 회사 명의로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.

제24조(제안의 권리보존)

- ① 불채택된 제안 중 회사가 3년 이내에 그 제안내용을 실행하여 경영개선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안관리 부서에서는 그 제안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거쳐 제안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4.10>
- ② 제안자는 불채택된 제안이 3년 이내에 회사에서 실행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재심청구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제안관리부서에 제출하면 구제를 받을수 있다. <신설 2013.4.10>

제25조(시제품 제작비용의 보상 및 지원)

- ① 제안시행 책임자 또는 시행부서는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안 지원요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통하여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, 아이디어제안서의 개선 내용에 소요예산 등 필요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4.10>
- ② 지원을 요청받은 제안주관부서는 제안의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마일리지 포상) 본문 제18조 규정의 마일리지 포상 대상은 '99. 9. 1일 이후 상정된 제안으로 한다. 단, 지식등록 및 관리지침에 의한 지식마일리지의 합산은 '02. 1. 1일부터 '04. 4. 16일까지 등록된 지식으로 한정한다.
- ③ (타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지식등록 및 관리지침은 자동 폐지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마일리지 포상) 본문 제18조 규정의 마일리지 포상 대상은 '06. 3. 30일 까지 평가 완료된 KOGAS제 안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합산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마일리지 포상) 본문 제18조 규정의 누적 마일리지 포상기준(별표4)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.

【별표 1】<개정 2007.5.23>

제안심의기준

항 목	ЯĤ	점			심 의 기 준			평 점
	유형	1억원 이상	5천만원 이상	2천만원 이상	5백만원 이상	5백만원 미만		
1. 개선효과	60		60	59~50	49~40	39~30	29~1	
		무형	탁월	우수	양호	보통	미흡	
		T 8	60~54	53~45	44~36	35~27	26~18	
	20		전부분 독창적	대부분 독창적	일부모방	대부분 모방	전부분 모방	
2. 창의성			20~16	15~11	10~8	7~4	3~1	
3. 노력도	10		탁월한 노력	상당한 노력	인정할만한 노력	일상적인 노력	노력 불필요	
			10~9	8~7	6~5	4~3	2~1	
4. 파급성	파급성 10		전사단위 적용가능	본부단위 적용가능	팀실단위 적용가능	반별단위 적용가능	참고할 만한 수준	
			10~9	8~7	6~5	4~3	2~1	
합 계	-	100						_

【별표 2】<개정 2021.8.30>

제안등급 부여기준

구 분	90점 이상	90점 미만 ~ 84점	84점 미만 ~ 78점	78점 미만 ~ 72점	72점 미만 ~ 66점	66점 미만 ~ 60점	60점 미만
개선제안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
지식제안		7등급					
아이디어제안		7등급					

※ 아이디어제안과 지식제안은 2차 포상 가능

- 아이디어제안 : 시행결과에 따른 개선제안 포상

- 지식제안 : 우수지식제안 포상(특별포상)

【별표 3】<개정 2021.8.30, 2022.05.04>

제안등급별 포상기준

(단위 : 천원)

구	분	1	2	3	4	5	6	7
\L _	유형제안	1,000	500	300	50	20	15	10
상금	무형제안	500	300	100	30	20	15	10
마음	일리지	30점	20점	15점	10점	5점	2점	2점

【별표 4】<개정 2001.10.10, 2007.5.23, 2010.8.2, 2023.02.28>

누적 마일리지 포상기준

마일리지 누적점수	200	350	500	800	1,100	1,500
포상금액	T 71 - 2011 - 20	50만원 50만원 -	국내연수		국외연수	
工で言句	50인권	50인권	제주	아주	미주	유럽

【별표5】<개정 2021.08.30, 2022.05.04, 2023.02.28>

제안심의위원

구 분	본	٨ŀ	지 사		
	사장 및 감사 직속	안전품질담당 감사담당	기 지	아저고므브자	
	경영전략	전략기획담당 총무회계담당 인사노무담당 ESG상생담당 ICT운영담당		안전공무부장 업무지원팀장 기계(1,2)부장 계전(1,2)부장	
제안심의	정비사업	생산기술담당 공급기술담당 대외사업정비담당		안전공무부장	
	에너지사업	에너지사업개발담당 엔지니어링사업담당 플랜트사업담당 수소인프라건설담당 수소인프라운영담당	관 로	업무지원팀장 관로정비부장 기전부장 사업소장	

재심청구서

제안명			
TII OL TI	소 속	사 번	성 명
제안자			(인
제안일		재심청구일	
배심청구사유			

미시행 사유서

소속 / 이름	
구분	미시행 사유서
개선내용 (미시행 사유)	

제안지원요청서

접수번호	제안일	소 속	사 번	성명
제안명				
지원내역				
급 액				
첨부문서				

시행부서장 : (인)

처(실) 및 지사장 : (인)

제안실시 결과보고서

소속 / 이름	
구분	결과보고서
개선내용 (미시행 사유)	

개선전	개선후